

1. 개정이유

해외로부터 야생동물 질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수입검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71호, 2021. 5. 18. 일부개정, 2024. 5.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가. 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정함(안 제4조의3 신설)
- 나.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자를 변경함(안 제44조의6 개정)
- 다. 법 제34조의13에 따른 야생동물검역관 임명을 위한 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44조의13 신설)
- 라. 법 제34조의13에 따른 야생동물검역사의 자격과 수당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44조의14 신설)
- 마. 법 제34조의14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범위를 정함(안 제44조의15 신설)
- 바. 법 제34조의15에 따른 수입금지물건에 대한 예외적인 수입허가 절차 및 조치명령·이행기간을 정함(안 제44조의16 및 제44조의17 신설)
- 사. 법 제34조의17 내지 제34조의20에 따라 수입검역 세부절차 및 검역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4조의18 내지 제44조의22 신설)

아. 법 제34조의21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안 제44조23 신설)

자. 법 제34조의21제7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안 제44조24 신설 및 [별표 12] 개정)

차. 법 제34조의22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
44조의25 신설)

카. 법 제34조의23에 따른 불합격품 등의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안 제44조의26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예산반영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11.29 ~ 2024.1.7.) 결과,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 규제 신설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법 제2조제8의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 질병을 말한다.

1. 제4조의2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

2. 그 밖에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야생동물 질병

제44조의6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장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으로 한다.

제44조의6(야생동물의 질병 발생 현황 공개)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과 시·도지사가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야생동물의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야생동물 질병으로 한다.

1. 야생조류의 조류인플루엔자

2.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포유류의 결핵

3.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포유류의 브루셀라병

4. 야생조류 및 포유류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5. 야생조류 및 포유류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광견병

6. 야생동물 질병의 긴급한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질병

②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야생동물 질병명

2.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한 사육시설(사육시설에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및 주소

3.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일시

4.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의 종류 및 규모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는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또는 기관 소식지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제44조의13부터 제44조의2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3(야생동물검역관 임명을 위한 교육) ① 법 제34조의13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검역관이 되려는 사람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대상질병, 지정검역물 등 검역에 관한 교육을 2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②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야생동물검역관으로 임명한다.

제44조의14(야생동물검역사의 자격과 수당 등) ① 법 제34조의13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검역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44조의13제1항에 따른 교육을 21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다.

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야생동물 검역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동물질병 관련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야생동물검역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법 제34조의13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검역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야생동물검역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의15(지정검역물의 범위) 법 제34조의14 각 호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 제34조의14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포유류, 조류 및 파충류
2. 법 제34조의14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법 제3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가 들어있는 진단 액류를 포함한다)

제44조의16(수입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7서식의 수입허

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험·연구조사 또는 야생동물 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현황
2. 전문인력 확보 현황
3. 허가를 받으려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서
가. 연구계획서 또는 사용계획서
나. 안전관리계획서

②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연구 또는 예방용 의약품 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8서식의 수입허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수입허가 증명서의 발급 여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수입허가 대상 물건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시설 및 장비 구비 여부
2. 별지 제40호의7서식의 수입허가 신청서에 적힌 수입물량의 적정성
3. 해당 수입금지물건에 대한 관리방법의 적정성
4. 해당 수입금지물건의 유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제44조의17(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① 법 제34

조의16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검역관이 법 제34조의14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포장 및 그 밖에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등”이라 한다)에 대해 반송을 명하거나 소각·매몰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34조의15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건의 경우: 수입 후 지체없이
2. 법 제34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출국의 검역증명서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위생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
3. 부패·변질되었거나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 후 지체없이
4.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국내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이나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 후 지체없이

② 법 제34조16제1항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명령을 받은 지정검역물등의 소각 및 매몰기준은 별표 8의4를 준용한다.

③ 법 제34조16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의18(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법 제34조의17제1항 단서에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야생동물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승인한 경우
2. 법 제3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수출한 야생동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여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

제44조의19(수입검역 신청 등) ① 법 제34조의18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 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9서식의 수입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검역 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는 검역을 받으려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1. 지정검역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2.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법 제34조의17제1항 단서에 따라 검역증명서의 첨부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44조의16제2항에 따른 수입허가 증명서 원본(법 제3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야생동물 수입 허가 및 관련된 서류 사본(해당하는 경

우에 한한다)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허가증 또는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허가서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허가서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증

5. 제44조의18제1항제3호에 따라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검역 신청은 검역을 받으려는 날부터 5일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한 신청서의 기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 사항을 문서로 즉시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4조의18에 따른 검역방법은 별표 8의7에 따라 실시하고, 검역기간은 별표 8의8과 같다.

④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전시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단기간 체류하는 야생동물
2. 우리나라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조류 또는 파충류
3. 특별한 관리방법을 통하여 사육되거나 생산되어 특정한 병원체가 없다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인정하는 지정검역물

제44조의20(휴대검역물의 신고) ① 법 제34조18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이하 “휴대검역물”이라 한다)을 수입신고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40호의10서식의 휴대검역물 수입신고서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입자의 성명

2. 휴대검역물의 종류·수량

3. 출발지

4. 그 밖에 휴대검역물의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휴대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휴대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을 출입 공항·항만 등에 소재하는 야생동물검역관에게 구두로 알린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4조의21(수입장소의 지정) ① 법 제34조의19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밖의 장소”란 「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 중 인천공항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19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 수입장소 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수입하려는 지정검역물을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미리 지정 장소, 지정 요청 사유 등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은 장소가 지정검역물의 검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수입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44조의22(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① 야생동물검역관이 법 제34조

의20에 따라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의11호서식의 수입검역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 또는 통관 서류에 별표 8의9에 따른 표지를 하는 것으로 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1. 공항·항만·우체국 그 밖의 장소에서 현장검역을 하는 지정검역물(휴대검역물을 포함한다)
2. 견본품
3.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4. 정부의뢰검역물
5. 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물건

② 수입하는 지정검역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지정검역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항공사 또는 육상운송회사가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역 신청이 없더라도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검역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40호의11서식의 수입검역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44조의23(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① 법 제34조의21제2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이하 “지정검역시행장”이라 한다)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 야생동물을 격리·사육할 수 있는 시설

2. 수입 시험 또는 실험용 동물 등을 보관하거나 사육할 수 있는 시설
(연구기관·대학·기업체 등에서 시험 또는 실험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것만 해당한다)

3. 야생동물의 사체 및 법 제34조의14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정
검역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하는 경우 한번에 수입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지정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③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8의10에 따른 검역시행장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별지 제40호의12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 평면도(설계도면 사본을 첨부한다)

2. 검역시설이 설치된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또는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4. 검역관리인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④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제3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가 확산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0호의13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이 변

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0의1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40의1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서 원본
2. 변경사항을 기재한 서류

⑥ 제4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와 해당 지정검역시행장의 검역관리인은 별표 8의11의 지정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44조의24(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4조의21제7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44조의25(지정검역물의 관리) ① 법 제34조의22제5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사육관리기간 중 야생동물의 분노 등 오물과 야생동물의 수송용기(輸送容器)의 수거·처리에 필요한 비용
3. 검역시행장에서의 야생동물을 제외한 지정검역물의 보관비
4. 검역시행장에서의 지정검역물의 소독, 입출고 및 하역에 필요한 비용

②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법 제34조의22제6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이나 지정된 운송차량에 대해 소독을 명하는 경우에는 소독명령 대상물, 소독방법·장소,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40호의16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소독명령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의22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8의12와 같다.

제44조의26(불합격품 등의 처분) ① 법 제34조의2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4조의23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까지를 말한다.

② 불합격품에 대한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44조의17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8의7부터 별표 8의12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 제2호카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카. 검역시행장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34조의21제6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경우 2)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검역시행장을 운영할 수	법 제34조의21제6항제1호 법 제34조의21제6항제2호 1	지정취소 지정취소			

없는 경우 3) 법 제34조의21제5항에 따	제6항제3호 법 제34조의2				
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1				
않은 경우 가) 지정검역시행장의 시	제6항제2호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설·장비 등의 지정기준		1개월	3개월	6개월	
에 미달하는 경우 나) 지정검역시행장 관리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 검역관리인을 선임하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지정취소
지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별지 제40호의7 서식부터 제40호의16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제44조의19제3항 관련)

1. 지정검역물의 검역

- 가.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이 검역대상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발송되었거나 경유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 나.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야생동물질병 및 인수공통감염병(人獸共通感染病)의 전파가능성 여부와 관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다. 지정검역물의 검역은 탐지동물이나 검색장비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라. 야생동물검역관은 법 제34조의21제2항에 따라 지정검역시행장에서 검역관리인에게 현물확인 또는 임상검사 등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확인해야 하고, 검역관리인은 현물확인 또는 임상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야생동물검역관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2. 위생조건 및 검역증명서

- 가. 야생동물검역관은 우리나라와 지정검역물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간에 검역에 관하여 협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합치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 나.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검역증명서 상의 지정검역물과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합치하는지를 대조해야 한다.
- 다.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는 야생동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원본(부분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3.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에 대한 검역은 제1호를 준용하여 할 수 있다.

4.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 물건의 검역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한다.

5.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검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정검역물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한 요령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다.

지정검역물 검역기간(제44조의19제3항 관련)

구분	지정검역물의 종류	검역기간
포유류	1. 영장류	30일
	2. 우제류	15일
	3. 기제류	10일
	4. 식육목	10일
	5. 박쥐목	180일
	6. 그 밖의 포유류	5일
조류	1. 휴대 반려 조류	5일
	2. 그 밖의 조류	10일
파충류	1. 파충류	7일
비고 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수입 시 상대국의 방역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표에 따른 검역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2.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지정검역물이 야생동물 검역대상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적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역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수입검역증명서 발급을 갈음하는 표지(제44조의2제1항 관련)

모형	규격	용도
	지름 바깥 원: 40mm 안의 원: 25mm 글자의 굵기 안의 원: 1mm 바깥 원: 1mm	1. 공항·항만·우체국 그 밖의 장소에서 현장검역을 하는 지정검역물(휴대검역물을 포함한다) 2. 견본품 3.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4. 정부의뢰검역물 5. 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은 물건

지정검역시행장 시설기준(제44조의23제3항 관련)

1. 수입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구 분	시 설 기 준	비 고
1. 검역준비실	검역관이 검사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해야 한다. 1) 기자재는 분무기, 냉장고 등 2) 소독약품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2. 검역시행장 위치	야생동물질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로 기존의 사육동물과 격리된 장소이어야 한다.	
3. 계류시설	1) 야생동물에 따라 전두수가 안전하게 사육관리 될 수 있는 견고한 시설로서 바닥은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물질로 오물 수거와 수세 및 소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2) 계류시설 입구에는 소독조를 설치해야 한다. 3) 야생동물의 특성에 따라 온도, 습도 및 사육면적 등 사육 환경이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4. 격리시설	병든 야생동물의 격리용 사육시설로서 검역용 사육시설과 동일한 구조로 하되 구획된 시설이 있어야 한다.	
5. 출입제한	검역시행장의 입구는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되어야 한다.	
6. 분뇨 및 폐기물 보관시설	동물의 배설물 등 폐기물과 폐사한 동물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고 등 적합한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표지판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야생동물검역시행장 표지판을 검역시행장 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2. 실험동물(SPF, Specific Pathogen Free) 검역시행장

구 분	시 설 기 준	비 고
1. 검역준비실	검역준비실 검역관이 검사물 취급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해야 한다. 1) 기자재는 동력분무기, 수동식분무기, 자비소독기, 냉장고, 액량계 등 구비 2) 소독약품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2. 검역시행장의 위치	야생동물질병 병원체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로 주변 50미터 이내에는 동물 관련시설(동물 사육시설, 도축장, 집하장, 사료공장 등)이 없는 격리된 장소이어야 한다.	
3. 계류시설	수입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사육, 관리될 수 있는 견고한 시설로서 바닥은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재질로 오물수거와 수세 및 소독이 용이하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4. SPF 실험동물의 사육시설	계류사는 각각 구획되어 창이 없는 설비로서 폐쇄되어 외부로부터 야생동물질병이 건물 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위한 방어벽(Barrier System)을 갖춘 시설로 실험동물(Specific Pathogen Free) 계통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 외부로부터 미세먼지를 차단하여 야생동물질병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여과시설(Filter) 및 자외선(Ultra Violet) 소독시설이 되어있는 공기 환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2) 사람에 의한 야생동물질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철저한 개인위생을 위한 샤워·수세 및 탈의시설을 거쳐 사육시설로 출입이 되도록 샤워·수세 및 탈의시설이 있어야 한다. 3) 멸균된 음수 및 사료가 공급되도록 벽면 멸균기를 통하여 멸균처리 되어 공급되거나, 멸균된 음수 및 사료가 오염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4) 관리 장비 및 비품·도구 등은 자외선 소독 등을 하여야	

	생동물질병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5) 창이 없는 시설로 외부로부터 쥐·곤충 등 동물의 유입이 불가능하도록 완전 폐쇄된 시설이어야 한다.	
5. SPF 실험동물의 사육환경	실험동물별 특성에 따라 습도, 온도, 사육면적 등 사육환경이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6. 분뇨 및 폐기물 처리시설	검역기간 중 동물의 배설물과 폐기물 등의 저장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하며, 사육시설이 야생동물질병에 오염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배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7. 보정시설	동물에 따라 검사 및 처치를 위한 보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출입제한	검역시행장의 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되어야 한다.	
9. 폐기물 보관시설	검역기간 중 폐사한 동물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고 등 적합한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0. 표지판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야생동물검역시행장 표지판을 검역시행장 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지정검역시행장 관리기준(제44조의23제4항 관련)

1. 지정검역시행장 내 소독 및 작업일지를 비치해야 한다.
2. 지정검역시행장에 입출고되는 검역물에 대한 위생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청결유지, 소독·살충 등 검역관 또는 검역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3. 검역관리인이 검역업무 수행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검역시설 및 기자재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4. 지정검역물을 지정검역시행장에 입출고하는 때에는 품명, 검역물 상태, 검역 결과 등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40호의14서식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5. 지정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의 이동은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지정검역물 외의 화물과 혼적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6. 지정검역시행장의 시설 및 지정검역물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7. 검역관리인은 검역기간 중 폐사한 동물에 대해서는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별지 제40호의14서식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8. 지정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의 식별이 용이한 곳에 별지 제40호의15서식에 따른 수입화물(검역)표를 선하증권(B/L)단위로 부착해야 한다.
9. 지정검역시행장 출입구와 검역물을 보관하는 시설 등 출입을 통제하는 곳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임을 고지하는 간판을 부착하여 출입자를 통제해야 한다.
10. 검역관리인은 지정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거나 지정검역물이 입고되기 전에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동물 검역 및 방역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1. 검역이 종료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사용하거나 지정검역시행장 밖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야생동물검역관이 선하증권과 지정검역물을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하고, 야생동물질병의 감염 및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야생동물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방역상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13. 지정검역시행장의 운영자 및 검역관리인은 별지 제40호의14서식의 관리대장을 1년간 비치해야 한다.

지정검역물의 운송·입출고·보관관리 기준(제44조의25제3항 관련)

1. 지정검역물 운송차량의 설비기준

가. 살아있는 야생동물 운송차량

- 1) 화물칸은 동물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오물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동물 수송 중 흔들리거나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일정한 간격의 칸막이가 설치되어야 한다.
- 2) 화물칸 상부에는 태양광선·비·눈 등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차폐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 3) 화물칸은 충분한 환기가 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4) 차량후면은 개폐식 문으로서 오물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앞좌석에는 수송 중 동물의 상태를 관찰하기 위한 안전창이 있어야 한다.

나. 그 밖의 운송차량

- 1) 컨테이너 등 운송용기는 수송 중 누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봉인이 가능해야 한다.
- 2) 수송 중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등이 컨테이너 등 운송용기 외부로 퍼뜨려지지 아니하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다. 공통: 운송차량은 전면 또는 측면에 지정검역물 운송차량임을 표시해야 하며 지정검역물의 잠금장치에 봉인이 가능해야 한다.

2. 지정검역물의 입출고·보관관리기준

가.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을 검역시행장에 입고·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검역물의 종류, 검역종료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나. 보관관리인은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의 품명, 입고일시, 검역종료 여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다. 보관관리인은 검역시행장에 입고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라.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은 검역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출고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검역물의 입출고 및 보관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행정처분의 기준(제78조 및 제44조의2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 또는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면허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7조의2제1항제1호, 법 제15조제1항제1호, 법 제17조제1항제1호, 법 제20조제1항제1호, 법 제22조제1호, 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 법 제34조의7제7항제1호, 법 제36조제1항제1호, 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법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생물자원 보전시설 또는 박제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오거나, 수렵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6)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

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다목에 따라 처분을 감경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 또는 면허정지처분 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마. 제2호다목의 폐쇄명령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로 등록된 시설 중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종류별로 사육 중인 개별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추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카. 검역시행장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34조의21제6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경우 2)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검역시행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법 제34조의21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지정검역시행장의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지정검역시행장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 검역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1제6항제1호 법 제34조의21제6항제3호 법 제34조의21제6항제2호	지정취소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지정취소 지정취소

수입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내용	수입국가	품명(학명)	중량(kg)	수송방법	도착항	도착예정일
수입목적						
용도						
관리방법			관리장소			
사용기간			사용 후 처리방법			
관리책임자	성명		직책	주요임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16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조사 또는 야생동물 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수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시험·연구조사 또는 야생동물 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현황 2. 전문인력 확보 현황 3. 연구계획서 또는 사용계획서 4. 안전관리계획서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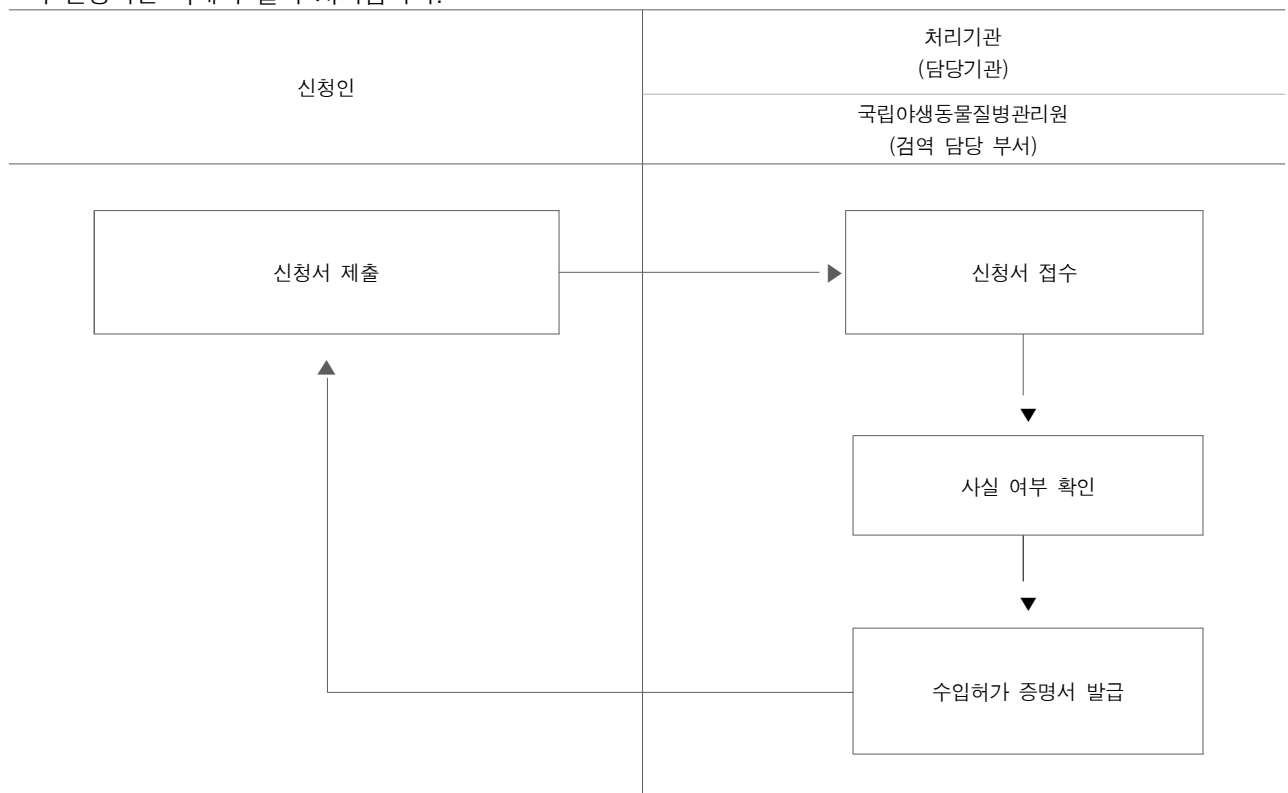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요령

- ① 신청인: 해당 검역물의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자의 성명,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② 내용: 수입국가, 품명(학명), 종량, 수송방법(선박, 비행기 등), 도착항(국내도착항) 등을 적습니다.
- ③ 수입목적: 수입목적 등을 적습니다.
- ④ 용도: 시험·연구조사용, 진료, 예방약 조제 등 용도를 적습니다.
- ⑤ 관리방법: 해당 검역물의 관리방법을 적습니다.
- ⑥ 관리장소: 해당 검역물의 관리장소를 적습니다.
- ⑦ 사용기간: 해당 검역물의 사용기간을 적습니다.
- ⑧ 사용 후 처리방법: 해당 검역물의 사용 후 처리방법(소각·매몰 등)을 적습니다.
- ⑨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의 성명, 직책, 주요임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수입허가 증명서 (CERTIFICATE FOR IMPORT PERMIT)

수입허가번호(Import Permit No.)	
수입허가일자(Date of Issue)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16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허가를 받은 것임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import permit was obtained as the following,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Item 1 of Article 34 of The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and Item 2 of Article 44.15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Name & Address of Applicant)	
보내는 사람의 성명, 주소 (Name & Address of Consignor)	
품명(학명) (Species or Article name, Scientific name)	
수량(Total Quantity)	
용도(Use)	
도착예정일(Estimated Date of Arrival)	
도착항(Arrival Port)	

※ 주의(Remarks)

1. 위의 야생동물 또는 물품의 수입검역을 신청할 때에는 이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In consigning the above creatures or packages in which the above articles are packed, they should be accompanied with this certificate.

2. 수입자는 위의 검역물을 수입할 때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검사를 받은 후 검역물을 받아야 합니다.

The consignee should receive the above commodities after the completion of inspection at the above President of National Institute for Wildlife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직인

President of National Institute for Wildlife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10mm×297mm[백상지 80g/㎡]

수 입 검 역 신 청 서

(APPLICATION FOR IMPORT QUARANTINE)

※ 뒷쪽의 첨부서류 및 민원처리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뒤쪽 참조
① 신고번호		② 신고일 (Date)	
③ 신고기관		④ B/L번호 (B/L No.)	
⑤ 입항일 (Date of arrival)		⑥ 선(기)명 (Name of ship or flight)	
⑦ 수입화물주 (Consignee)	성명 (Name)	상호 (Company name)	
	주소 (Address)		
⑧ 수출자 (Consignor)	성명 (Name)	⑨ 수출국 (Country of export)	
	주소 (Address)		
⑩ 학명 (Species)		⑪ 모델·규격 (Sex, Age, color, etc.)	
⑫ 수량 (Number of head)		⑬ 금액 (Total cost)	
⑭ 도착항 (Port of arrival)		⑮ 생산국 (Country of production)	
⑯ 선적항 (Port of shipping)		⑰ 선적일 (Date of shipping)	
⑱ 담당자			

위와 같이 수입검역을 신청합니다.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wild animal(s).

년(Year) 월(Month) 일(Date)

검역신청인 (한글)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소 :

Applicant for Quarantine (영문) Name and Signatur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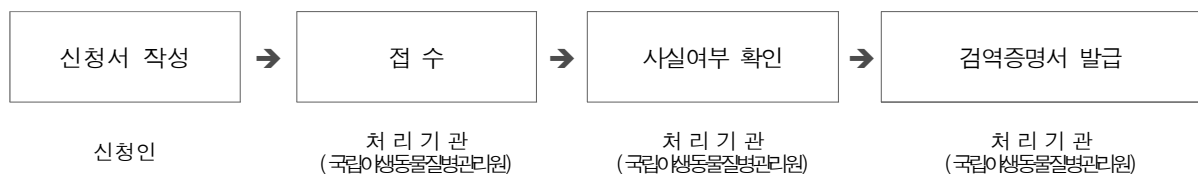
Address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귀하

(To the President of National Institute for Wildlife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첨부서류	1. 지정검역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2.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법 제34조의17제1항 단서에 따라 검역증명서의 첨부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44조의15제3항에 따른 수입허가 증명서 원본(법 제3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야생동물 수입 허가서와 관련된 서류 사본(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허가증 또는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허가서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허가증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증 5. 제44조의17제1항제3호에 따라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요령	① 신고번호 : 신청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신고일 : 해당 검역물에 대한 검역을 신청하는 일자 기재 ③ 신고기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기재 ④ B/L번호 : 선하증권(B/L)번호 기재(수입에 한하며, 없는 경우 빈칸) ⑤ 입항일 : 입항일자 기재 ⑥ 선(기)명 : 해당 검역물이 선적된(선적될) 선박·항공기명을 영문으로 기재 ⑦ 수입화물주 : 해당 검역물의 화물주명 또는 회사명 기재 ⑧ 수출자 : 상대국에서 해당 검역물을 발송한 화물주명 또는 회사명 기재 ⑨ 수출국 : 해당 검역물을 수출하는 국가명 기재 ⑩ 학명 : 해당 검역물의 학명 기재 ⑪ 모델·규격 : 해당 검역물의 성별, 연령, 털색 및 암수 구분하여 마릿수 기재 ⑫ 수량 : 해당 검역물(동물)의 마릿수 기재 ⑬ 금액 : 해당 검역물의 수입금액(US\$) 기재 ⑭ 도착항 : 해당 검역물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항구명(공항포함) 기재 ⑮ 생산국 : 해당 검역물이 생산된 국가명 기재 ⑯ 선적항 : 해당 검역물이 선적된 항구명(공항포함) 기재 ⑰ 선적일 : 해당 검역물이 선적된 일자 기재 ⑱ 담당자 : 신청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휴대검역물 수입신고서 (IMPORT DECLARATION OF PORTABLE QUARANTINE GOODS)

(앞쪽)(Front)

신고번호(Declaration No.)		신고일(Date)	
신고인 (Declarer)	성명(Name)	여권번호(Passport No.)	
	국적(Country)	성별(Sex)	☐ 남성(Male) ☐ 여성(Female)
	주소(Address) (전화번호, Tel:)		
검역대상품 (Quarantine objective)	학명 (Scientific name)	개수 (Quantity, C/ T)	중량 (Total weight or n umber)
용도(Use)			
선명 또는 항공기명 (Name of Ship or Flight)		그 밖의 사항 (Etc.)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8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0에 따라 위와 같이 검역을 신고합니다.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wild animal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34.18 of the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and Article 44.19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Applicant for Quarantine Name and Signature: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귀하

To the President of National Institute for Wildlife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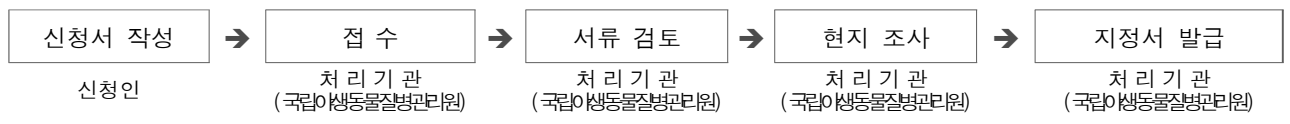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수입검역 증명서			
신청인	성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Tel:)		
수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Tel:)		
종명(학명)			
수량(개체수)		총량(kg)	
운송수단(편명)		선적일	
도착항		도착일	
수출국		원산지 (생산지)	
비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검역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직인 검역관 (QUARANTINE OFFICIAL) 서명 (Signature)			

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인 첨부서류	가. 지정 신청 시 1) 시설 평면도 1부 2) 검역시설이 설치된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또는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4) 검역관리인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나. 지정변경 신청 시 1) 검역시행장 지정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앞쪽)

제 호				
검역시행장 지정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검역시행장 명칭				
검역시행장 주소	(전화번호:)			
검역대상물				
검역관리인 성명				
지정면적	대지: m ²		검역시설: m ²	
검역시설				
지정기간				
지정조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직인				
※ 지정사항 변경 시 변경내용을 뒤쪽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연월일	구분	처음	변경	확인(날인)

지정검역시행장 동물 관리일지

지정검역시행장명 :

검역관리인 :

날인 또는 서명

야생동물검역관 :

날인 또는 서명

1. 일반사항

종류	입고(반출) 년월일	입고(반출) 수량	수출국명	품명	년령	성별	모색
입검당시 상태							
검역결과							

2. 관리일지

검사일자 검사사항									
영양상태									
피 부 병									
호 흡 기									
채식상태									
배설물상태									
배뇨상태									
외 상									
폐사체 처리									
기 타									
사료종류									
종사인원									

210mm×297mm[백상지 80g/m²]

수 입 화 물 (검 역) 표

품 명			
수 량	C/T	중 량	kg
입항년월일		입고년월일	
선 명			
B/L NO.			
기 호			
화물종별			
수입신고여부			
화 주 명			
수출국명			
검역사항		경유국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지정검역물 소독명령서	
명령대상자	성명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명령대상물	학명
	중량(kg, 개체 수)
이행기간	
장소	
방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명령합니다. 년 월 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4조의6(야생동물의 질병 발생 현황 공개) ① <u>환경부장관</u>과 과 시·도지사가 법 제34조의8제1 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야 생동물의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야생동물 질병으로 한다. 1. ~ 6. (생략) ② <u>환경부장관</u>과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③ (생략) <u><신 설></u>	<u>제4조의3(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u> 법 제2조제8의2호에서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u>제4조의2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u> 2. <u>그 밖에 지속적인 감시 및 관 리가 필요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질병</u> 제44조의6(야생동물의 질병 발생 현황 공개) ① <u>국립야생동물질 병관리원장</u>----- ----- ----- -----. 1. ~ 6. (현행과 같음) ② <u>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u>--- ----- -----. 1.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u>제44조의13(야생동물검역관 임명 을 위한 교육) ① 법 34조의13제2</u>

<신 설>

항에 따라 야생동물검역관이 되려는 사람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대상질병, 지정검역물 등 검역에 관한 교육을 2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②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야생동물검역관으로 임명한다.

제44조의14(야생동물검역사의 자격과 수당 등) ① 법 제34조의13 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검역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44조의13 제1항에 따른 교육을 21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다.

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야생동물 검역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동물질병 관련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야생동물검역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신 설>

법 제34조의13제3항에 따라 야생
동물검역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야생동물검역사
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의15(지정검역물의 범위) 법
제34조의14 각 호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
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
을 말한다.

1. 법 제34조의14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포유류, 조류 및 파충류

2. 법 제34조의14제2호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법 제34조의15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야
생동물 질병의 병원체가 들어있
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신 설>

제44조의16(수입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
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7서식
의 수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험·연구조사 또는 야생동물 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현황

2. 전문인력 확보 현황

3. 허가를 받으려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다음 각 목의 계획서

가. 연구계획서 또는 사용계획서

나. 안전관리계획서

②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연구 또는 예방용 의약품 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8서식의 수입허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수입허가 증명서의 발급 여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수입허가 대상 물건을 관리할

<신 설>

수 있는 전문인력·시설 및 장비
구비 여부

2. 별지 제40호의7서식의 수입허
가 신청서에 적힌 수입물량의 적
정성

3. 해당 수입금지물건에 대한 관
리방법의 적정성

4. 해당 수입금지물건의 유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험을 발생
시킨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제44조의17(수입금지물건 등에 대
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① 법
제34조의16제1항에 따라 야생동
물검역관이 법 제34조의14에 따
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포장 및
그 밖에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등”이라 한다)에 대해
반송을 명하거나 소각·매몰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
하는 경우 그 시기는 다음 각 호
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34조의15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건의 경우: 수입 후 지

체없이

2. 법 제34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야생 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출국의 검역증명서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위생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

3. 부패·변질되었거나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 후 지체없이

4.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국내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이나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 후 지체없이

② 법 제34조16제1항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명령을 받은 지정검역물등의 소각 및 매몰기준은 별표 8의4를 준용한다.

③ 법 제34조16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

<신 설>

<신 설>

다. 다만,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
로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의18(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법 제34조의17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야생동물 검역을 담당하는 정
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
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국립
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승인한
경우

2. 법 제34조의15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수출한 야생동물이 수입국에
서 통관되지 못하여 반송되어 수
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

제44조의19(수입검역 신청 등) ①

법 제34조의18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9서식의 수입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검역 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는 검역을 받으려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1. 지정검역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2.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법 제34조의17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역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44조의16제2항에 따른 수입허가 증명서 원본(법 제34조의1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야생동물 수입허가와 관련된 서류 사본(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허가증 또는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허

가서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
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허가서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야
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
가증

5. 제44조의18제1항제3호에 따라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검역 신청은 검
역을 받으려는 날부터 5일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신
청한 신청서의 기록사항이 변경
되었을 때에는 변경 사항을 문서
로 즉시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4조의18에 따른 검역방
법은 별표 8의7에 따라 실시하고,
검역기간은 별표 8의8과 같다.

④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지
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1. 전시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단기간 체류하는 야생동물

2. 우리나라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조류 또는 파충류

3. 특별한 관리방법을 통하여 사육되거나 생산되어 특정한 병원체가 없다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인정하는 지정검역물

제44조의20(휴대검역물의 신고) ①

법 제34조18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이하 “휴대검역물”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40호의10서식의 휴대검역물 수입신고서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입자의 성명

2. 휴대검역물의 종류·수량

3. 출발지

4. 그 밖에 휴대검역물의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휴대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자휴대품

<신 설>

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휴대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을 출입 공항·항만 등에 소재하는 야생동물검역관에게 구두로 알린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4조의21(수입장소의 지정) ①

법 제34조의19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밖의 장소”란 「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 중 인천공항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19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 수입장소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수입하려는 지정검역물을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미리 지정 장소, 지정 요청 사유 등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은 장소가 지정검역물의 검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 설>

별도 수입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44조의22(수입검역증명서의 발
급 등) ① 야생동물검역관이 법
제34조의20에 따라 수입검역증명
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
0의11호서식의 수입검역 증명서
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
물 또는 통관 서류에 별표 8의9에
따른 표지를 하는 것으로 수입검
역증명서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1. 공항·항만·우체국 그 밖의
장소에서 현장검역을 하는 지정
검역물(휴대검역물을 포함한다)

2. 견본품

3.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정
검역물

4. 정부의뢰검역물

5. 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물건

② 수입하는 지정검역물의 소유
권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
우 등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가

<신 설>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지정검역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항공사 또는 육상운송회사가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역 신청이 없더라도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검역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40호의11서식의 수입검역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44조의23(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① 법 제34조의21제2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이하 “지정검역시행장”이라 한다)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 야생동물을 격리·사육할 수 있는 시설

2. 수입 시험 또는 실험용 동물 등을 보관하거나 사육할 수 있는 시설(연구기관·대학·기업체 등에서 시험 또는 실험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것만 해당한다)

3. 야생동물의 사체, 법 제34조의14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

정검역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하는 경우 한번에 수입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지정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③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8의10에 따른 검역시행장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별지 제40호의12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 평면도(설계도면 사본을 첨부한다)

2. 검역시설이 설치된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또는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4. 검역관리인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④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제3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가 확산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0호의13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4항에 따라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0의1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40의1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서 원본

2. 변경사항을 기재한 서류

⑥ 제3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와 해당 지정검역시행장의 검역관리인은 별표 8의11의 지정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44조의24(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4조의21제7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44조의25(지정검역물의 관리) ① 법 제34조의22제5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사육관리기간 중 동물의 분뇨·퇴비 등 오물과 동물의 수송용기(輸送容器)의 수거·처리에 필요한 비용

3. 검역시행장에서의 동물을 제외한 지정검역물의 보관비

4. 검역시행장에서의 지정검역물의 소독, 입출고 및 하역에 필요한 비용

②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법 제34조의22제6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이나 지정된 운송차량에 대해 소독을 명하는 경우에는 소독명령 대상물, 소독방법·장소, 이

<신 설>

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40호의16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소독명령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의22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8의12와 같다.

제44조의26(불합격품 등의 처분)

① 법 제34조의2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4조의23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까지를 말한다.

② 불합격품에 대한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44조의17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